

평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평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	
번호	57

제출연월일 : 2011. 6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상위법인 「지방재정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평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 확대(안 제4조)

-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을 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 제138조에 규정된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함(안 제4조).

기존	개정
제4조(재정보증 한도액)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은 <u>110만원</u> 이상으로 한다.	제4조(재정보증 한도액)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은 <u>1천만원</u> 이상으로 한다.

나. 그밖에 상위법령의 정비로 인한 보완(안 제1조, 제7조)

○ 제1조(목적) 중 “「지방재정법」 제116조” 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95조” 로 개정

기존	개정
제1조(목적) 이 조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는 「지방재정법」 제95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○ 제7조(보험료의 청구 및 보상)제1항 중 “「지방재정법」 제115조” 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94조” 로 개정

기존	개정
제7조(보험료의 청구 및 보상)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「지방재정법」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으로 징수하기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	제7조(보험료의 청구 및 보상)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「지방재정법」 제9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으로 징수하기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관계부서승인 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 : 2011. 03. 02 ~ 03. 22(21일간), 제출된 의견없음
- 마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평창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평창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”를 “평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 95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계기된 자”를 “열거된 사람”으로, “군수”를 “평창군수(이하“군수”라 한다)”로, “인정한 자”를 “인정하는 사람”으로 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제2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조에 따른”으로, “110만원”을 “1천만원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규정에 의한”을 “규정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지방재정법」 제94조에 따라”로,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)”를 “(보증보험증권의

확인 및 보관·관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,
“보관 관리한다”를 “보관·관리 한다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평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회계관계공무원)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<u>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제1호에 <u>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</u> <p>제3조(재정보증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제2항에 <u>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,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,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</u></p>	<p><u>평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지방재정법</u>」 제95조에 따라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회계관계공무원) ----- ----- -----<u>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u>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열거된 사람</u> ----- ----- <u>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</u> ----- ----- <u>인정하는 사람</u> <p>제3조(재정보증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----- <u>따른</u> ----- ----- -----</p>

증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.

④ (생략)

제4조(재정보증 한도액)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은 110만원 이상으로 한다.

제5조(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)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.

제7조(보험료의 청구 및 보상)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재정보증 한도액) 제2조에 따른 -----
----- 1천만원 -----
-----.

제5조(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) - 제2조에 따른 -----

-----.

제7조(보험료의 청구 및 보상) ① ----- 「지방재정법」 제94조에 따라 -----
----- 그 밖에 -----

----- 해당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-----제2항에 따라--

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
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
리 취하여야 한다.

제8조(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
관관리) ① (생략)

②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
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
이를 보관 관리한다.

-----.

제8조(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
관·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 해당 -----

----- 보관·관리 한다.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재정법

제94조 (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)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.

② 출납원과 그 출납사무를 대리 또는 분임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.

제95조 (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) ① 회계관계공무원(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나목)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)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재정법 시행령

제138조 (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) ①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·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.